

## 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 : 도로 불법적치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04. ~ 2019.12.18.(15일간)
3. 송달할 서류의 종류 :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불법점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4.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5. 불법 도로점용 현황(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 소재지  | 소유주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비고   |
|------|------|----------|------|------|
| 붙임참조 | 붙임참조 | 붙임참조     | 붙임참조 | 붙임참조 |

### 6. 공고내용

- 상기 대상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계고장 발부를 통해 자진 철거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영장 통지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기반과 도시관리팀(☎032-560-44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